

해묵은 색깔론·망언 되풀이... “원천 차단을”

국회의원 망언부터 현수막 게시까지 연이어 발생
역사적 진실 왜곡 이념 논쟁 통해 세력 결집 노력
4·3특별법 상 처벌·제재 근거 없어... 개정 필요성

특별기획 제주 4·3 75주년

<1>반복되는 왜곡·편향 논란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 4·3사건이 75주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제주 4·3은 4·3특별법 후속조치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고 직권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이뤄지는 등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 본보는 4·3 현안에 대한 다각도의 진단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남아있는 과제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한다.

제주 4·3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 2003년 4·3진상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2022년 보상금 지급,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진행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고난의 길을 헤쳐왔다. 그러나 일부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 논쟁을 통해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4·3을 편향,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이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제주 4·3 왜곡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명문화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국회의원 망언부터 현수막까지... 4·3 왜곡 논란=제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최근 제주 전역에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포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공공연히 내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도내 약 80여 곳에 4·3추념식 하루 뒤인 내달 4일까지 게시될 것으로 예정됐다. 이에 도내 4·3관련 단체와 제주도·제주도의회·교육청, 정치권까지 나서 현수막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4·3유족회는 해당 현수막을 내건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문제의 현수막을 정당한 방법으로 철거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고 있는 탓이다. 해당 현수막들 역시 ‘정당’ 명의로 게시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도 이를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해석했다.

또 앞서 지난달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북한 지령설’을 언급하는 망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4·3 단체들은 이같은 4·3 왜곡 행위에 대해 “지난 수 십년간 제주도민사회를 괴롭혀 온 색깔론을 다시 덧씌우며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과 대립의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지탄했다.



제75주년 4·3을 일주일여 앞둔 26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은 도민들이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왜곡·편향’ 처벌... “4·3특별법 개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13조는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가 2003년 펴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에 대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부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지령설’, ‘공산폭동’이라는 표현은 보고서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즉 이들의 주장은 현 4·3 특별법이 명시한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근거는 명확치 않다. 현행 4·3특별법은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할 뿐, 제31조(벌칙) 조항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31조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구성, 집무집행 방해, 비밀 엄수와 관련한 내용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21년 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질 당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보상금 문제와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에 방향이 집중되며 허위사실 유포 관련 처벌 조항 마련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최근 제주 4·3을 왜곡할 경우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태영호 의원의 4·3 관련 망언을 계기로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 4·3진상조사 결과나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민간단체사업 본역... 3면 / ‘왕벚나무’ 제주특산식물로 인정받을까... 5면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도, 워킹그룹 운영 강화
국회·정부 설득 논리 등 보강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산하 개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헌법 개정 추진 절차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올해 1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운영 중이다. 자문위원회는 총강·기본권·경제(1분과),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2분과), 사법부·개헌절차(3분과), 선거·정당제도(4분과) 등 4개 분과로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의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분석해 왔다. 또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워킹그룹은 이날 회의를 열어 국회 등 개헌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워킹그룹은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지방분권 개헌을 이속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5월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제주 4·3 경거냈으니 75년, 달고 썼노라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일시: 2023. 4. 3. (월) 오전 10:00~11:30 장소: 제주 4·3평화공원(위령제단 및 추념광장)

2023. 4. 3. 10:00~10:01 1분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추념식에 참석하실 분은 오전 09:20까지 반드시 입장해 주십시오.
행사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념식 식후행사로 문화제가 개최되오니 11:30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수송버스 운행안내 (제주시권역)

- ① 한림읍사무소(07:30) → 4·3평화공원
- ② 애월읍사무소(07:40) → 4·3평화공원
- ③ 구좌읍사무소(08:00) → 4·3평화공원
- ④ 조천읍사무소(08:10) → 4·3평화공원
- ⑤ 한경면사무소(07:30) → 4·3평화공원
- ⑥ 일도1동 산지천로터리(08:10) → 건일동주민센터(08:15) → 일도2동주민센터 북측 농협 앞(08:35) → 4·3평화공원
- ⑦ 이도1동 상성혈 주차장(07:50) → 이도2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08:00) → 아라동주민센터(08:25) → 4·3평화공원
- ⑧ 오라동 공설운동장 시계탑(07:50) → 삼도1동 중앙초교 체육관 서측 북개지역(08:00)
- ⑨ 삼도2동 로베로호텔 앞(08:20) → 4·3평화공원
- ⑩ 용담2동주민센터 인근 북개천주차장(08:00) → 용담 새마을금고 본점(08:05) → 4·3평화공원
- ⑪ 화북동 청소년문화의 집 앞(08:00) → 삼양동 삼양교회 주차장(08:20) → 불개동복지회관 앞(08:30) → 4·3평화공원
- ⑫ 노형동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07:50) → 제주도청 앞 로터리(08:00) → 4·3평화공원
- ⑬ 외도동주민센터 통죽 공터(07:40) → 이호동주민센터 정류장(07:50) → 도두동 오래물관광 주차장(08:05) → 4·3평화공원

* 정류장 위치 및 출발시간 문의: 제주시 자치행정과(728-1962), 읍·면·동 4·3업무 담당자

도민 수송버스 운행안내 (서귀포시권역)

- ① 대정 홈마트 앞(07:20) → 4·3평화공원
- ② 안덕면사무소(07:30) → 4·3평화공원
- ③ 남원읍사무소(서귀포수협 앞)(07:50) → 4·3평화공원
- ④ 이종섭미술관 주차장(07:40) → (구)시민회관건너편(제일스포츠인근)(07:45) → 영천동주민센터(07:50) → 4·3평화공원
- ⑤ 호문동주민센터(07:40) → 비석거리 제주시방향(07:50) → 영천동주민센터(07:55) → 4·3평화공원
- ⑥ 대륜동주민센터(07:30) → 중앙로터리(서귀포약국 앞)(07:40) → 중앙여중(07:45) → 4·3평화공원
- ⑦ 예래동주민센터(07:10) → 중문동주민센터(07:20) → 대전동주민센터(07:30) → 4·3평화공원
- ⑧ 동문로터리(파리버게트 앞)(07:45) → 동홍동주민센터(07:50) → 4·3평화공원
- ⑨ 성산읍주민센터(07:30) → 표선면사무소(07:55) → 4·3평화공원

* 정류장 위치 및 출발시간 문의: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3993), 읍·면·동 4·3업무 담당자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도민회 회의실, 02-3662-2650),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도민회 사무실, 051-417-7900)에서 4월 3일 분향소를 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